

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
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10월 21일

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 용 분 야	임용예정 직 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 서	직 무 내 용
법률전문요원	가급 *35시간 (시간선택제임기제)	1	2년	법 무 당 관 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요시책사업 전반에 대한 법령해석 및 검토○ 중요소송 대응 및 행정심판 법률 지원○ 중요문서(협약서, 중요계약서등) 심사○ 시정 현안업무 및 집단민원등에 대한 법률자문
투자유치 (영어)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1	2년	투자유치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영어권 외국기업의 투자정보 발굴 및 유치 추진○ 외국 투자유치 대상기업 DB구축 및 관리○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홍보 · 설명회 추진○ 유치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○ 투자유치 활동 통역 및 각종 홍보자료 등 번역지원
별관 건강관리실 운영	라급 *35시간 (시간선택제임기제)	1	2년	건강증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 (만성질환 대상자 관리)○ 상비약 지급 및 응급처치○ 직원 건강증진 지원 (금연, 근간장완화프로그램 등)○ 홍보 및 환경조성

*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공무원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

3. 응시자격 요건

○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)에 해당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폐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폐행위로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 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별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폐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지역·성별·연령 :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임용요건 :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
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년)이 지나지 않아야 함.
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임용분야 (임용직급)	임용자격기준
법률전문원 (기급, *35시간, 시간선택제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,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 ·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법무법인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</p>
투자유치(영어) (일반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 ·정부 및 자치단체, 법인, 기관, 기업, 연구소 등에서 투자유치 업무에 근무한 경력 ※ 면접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</p>
별전강관리실운 (기급, *35시간, 시간선택제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에서 정한 "간호사" 면허소지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▶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· 「의료법」 기준 종합병원에서 임용예정분야에 근무한 경력</p>

- ※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
- 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
- ※ 전임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,
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. 보수 수준

-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주35시간* 시간선택제가급 (5급 상당)		53,974천원	① 연봉 외 급여(각종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지방행정주사 (6급 상당)	76,686천원	51,098천원	②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주35시간* 시간선택제라급 (8급 상당)	48,111천원	34,320천원	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시험일정

응시원서접수	시험구분	서류심사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2021. 11. 1.(월) ~ 11. 3.(수), 3일간	서류전형 면접시험	2021. 11. 9.(화)	-	2021. 11. 10.(수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
※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시험방법

< 1차 서류전형 >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- ▶ 서류전형 기준 : 직무 관련 학위, 경력, 자격증 등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에서 별도 설정 및 시행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에 공고
(※분야별정보→산업경제→창업/취업→시험정보→임기제/별정직 공무원)

< 2차 면접시험 >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및 개별발표(6급상당 이상) 및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평가
-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(분야별 20점)
-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※ 불합격 기준 :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(모두 불합격인 경우)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에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응시원서 접수

○ 교부처 :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포함)을 출력하여 사용

○ 접수기간 : 2021. 11. 1.(월) ~ 11. 3.(수),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

○ 접수처 :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대구광역시청 3층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
-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- 우편봉투 곁면에 "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" 문구 표기
- 주 소 : 우(41911)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

7. 제출서류
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서식 제1호) 1부

② 응시원서(별지 서식 제2호) 1부

- 응시수수료 :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'대구광역시수입증자' 구입(수입인지 아님)

※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
(5급, 가급: 1만원, 67급, 나다급: 7천원, 89급, 라마급: 5천원)

③ 이력서(별지 서식 제3호) 1부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

④ 자기소개서(별지 서식 제4호) 1부

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서식 제5호) 1부
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서식 제6호) 1부

⑦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서식 제7호) 1부

⑧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
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※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(별지 서식 제8호) 제출

⑨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
(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)

-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를 정확히 기재되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, 연락처 기재

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(별지 서식 제9호)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(예시 : 주 20시간 근무)

- 경력증빙자료(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)

-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1부

- 건강보험자격 특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(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
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☞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(학력, 경력 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(*최종합격자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)

- ☞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- ☞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제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

⑩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별지 서식 제10호) 1부

⑪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⑫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9호) 1부(해당자에 한함)

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(별지서식 제11호) 1부(해당자에 한함)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,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제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gu.go.kr)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(☎ 053-803-277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 1>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법률전문요원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'가'급	1명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
대구광역시	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요시책사업 전반에 대한 법령해석 및 검토 ○ 주요소송 대응 및 행정심판 법률 지원 ○ 중요문서(협약서, 중요계약서 등) 심사 ○ 시정 현안업무 및 집단민원 등에 대한 법률자문 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 기획력·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 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률 전문 지식 ○ 주요시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지식 	

관련분야 : 법률전문요원	
응시자격요건	경력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 법무법인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

* 우대요건: 해당없음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투자유치(영어) 분야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	일자리투자국 투자유치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 ○ 기업 상담 및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○ 영문 홍보물 제작, 국내·외 홍보, 통·번역 지원
------	--

필수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

필수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지식 ○ 국내·외 투자유치설명회, 투자상담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한 경험 및 전문지식,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소양
------	--

관련분야 : 투자유치	
응시자격요건	<p>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및 자치단체, 법인, 기관, 기업, 연구소 등에서 투자유치 업무에 근무한 경력 -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▶ 면접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

* 우대요건: 해당없음

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별관 건강관리실 운영	지방시간선택제임기 제 "라"급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대구광역시	건강증진과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(만성질환 대상자 관리) ○ 상비약 지급 및 응급처치 ○ 직원 건강증진 지원(금연, 근간장완화프로그램 등) ○ 홍보 및 환경조성
------	---

필수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

필수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및 간호지식
------	---

관련분야 : 간호사	
응시자격요건	<p>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에서 정한"간호사"면허소지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▶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의료법」 기준 종합병원에서 임용예정분야에 근무한 경력

* 우대요건: 해당없음